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20570호, 2024.12.20. 공포, 2025.6.21.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신설·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공계인력 조사의 조사대상·범위·방법 등 규정(안 제6조)

법 개정에 따라 조사대상에 소속인력을 추가하고 조사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며 조사방법에 온라인조사를 추가하고자 함

나. 이공계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안 제8조 제5항)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다. 연구장려금 지원수준 및 환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8조제2항, 안 제8조의2)

연구장려금 지원 수준을 등록금, 숙식비·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법에서 이공계 산·학·연 의무 종사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환수 규정을 삭제함

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명확화(안 제8조의3 신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를 명시하고,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 제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함

마.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안 제17조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와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바.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 명시(안 제26조의2 신설)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사. 법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3조, 안 제11조)

법으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내용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3.21. ~ 4.30.)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중 “실태조사”를 “이공계인력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를 “이공계인력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와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 인력의 고용, 채용, 처우, 활용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유학생 및 취업자 등의 유입과 유출 현황에 관한 사항
3. 이공계 대학원생 관련 연구현황, 재정지원 등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
4. 교육이력, 일자리 현황 등 이공계 석사·박사의 재학·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사항

5. 이공계 인력의 근로환경, 복지·휴직 제도 활용 실태 등 일·생활 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3항 중 “실태조사는 현지조사·우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를 “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우편조사·온라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지표”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9항) 중 “제5조제4항 각 호의”를 “제5조제4항 각 호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인재개발 활동·인식 현황, 경력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교육, 육성, 연구 및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과 처우, 경력개발, 연구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제8조 제목 중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를 “이공계 대학상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를 “등록금, 숙식비·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및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활성화
2. 이공계 대학·연구소의 연구기능, 인프라, 연구지원체계 혁신
3.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 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
4. 공공 인프라 및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학의 학과”를 “대학(원)의 학과(전공)”으로 본문과 단서의 “학과”를 각각 “학과(전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학·연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날”을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로 하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법 제9조의4제1항의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 중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중 “재교육·재훈련”을 “재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를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조의 “재교육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의 “재교육훈련”을 “재교육등”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조직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4.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관련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정보수집 범위”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성명, 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등 기본정보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및 자격정보
3.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종사한 경력정보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5.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법 제23조2의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지역의 활동 지원
3. 과학기술 콘텐츠 및 과학기술문화 우수상품 선정·확산 지원
4.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의 성과 관리·확산 지원

제2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3. (생 략) 4. <u>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 에 관한 사항</u>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삭 제></u>
제6조(<u>실태조사</u> 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u>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u> 를 <u>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3 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u> 1. ~ 3. (생 략) ② <u>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u> 1. <u>이공계인력의 채용 조건</u> 2. <u>이공계인력의 급여 수준</u> 3. <u>이공계인력이 종사하는 직무 분 야</u> 4. <u>이공계인력에 대한 복지</u> 5. <u>이공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u> 6. <u>이공계인력의 기술·연구 성과</u> 7. <u>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u>	제6조(<u>이공계인력조사</u> 의 시기 및 방 법 등) ① ----- ----- <u>이공계인 력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 라 한다)</u> 를 <u>다음 각 호의 기관과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u>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와 유형 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이공계 인력의 고용, 채용, 처 우, 활용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u> 2. <u>이공계 유학생 및 취업자 등의 유입과 유출 현황에 관한 사항</u> 3. <u>이공계 대학원생 관련 연구현 황, 재정지원 등 대학원의 연 구·교육 환경에 관한 사항</u> 4. <u>교육이력, 일자리 현황 등 이공 계 석사·박사의 재학·졸업 현</u>

<u>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실태조사는 현지조사·우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⑤ <u>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 1. <u>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 2. 「<u>국가기술자격법</u>」에 따른 <u>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u> 3. <u>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u>	<u>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사항</u> 5. <u>이공계 인력의 근로환경, 복지·휴직 제도 활용 실태 등 일·생활균형과 연구·육아 병행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이공계인력 조사는 현지조사·우편조사·온라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 등 -----</u> --. ④ <u><삭 제></u> ⑤ <u><삭 제></u>
--	--

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22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 으로 선정된 사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 항 각 호의 이공계인력 중에서 성 별, 나이, 종사 분야 및 근무기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표 본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을 대 상으로 지속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⑦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이공계인 력 수지지표에는 제6항에 따른 표 본집단에 속하는 이공계인력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연도별, 국가별, 학위별 유출 · 유입 현황 2. 국내의 소속 기관별, 전공분야 별, 성별 현황 <신 설>	⑥ <삭 제> ⑦ <삭 제> ④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소속된 이공계인력의 인재 개발 활동·인식 현황, 경력개발 등에 관한 실태조사
---	---

⑧ 제7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수지 지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⑨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연구장려금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 이상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2. 이공계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교육, 육성, 연구 및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과 처우, 경력개발, 연구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조사 ----- ⑥ ----- 제5조제4항 각 호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 제8조(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등록금, 숙식비·교재구입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u>1.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u> <u>및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활성화</u> <u>2. 이공계 대학·연구소의 연구기능,</u> <u>인프라, 연구지원체계 혁신</u> <u>3.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u> <u>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 대학교육 강화</u> <u>4. 공공 인프라 및 첨단시설·장비를</u> <u>활용한 대학 교육의 질 제고</u>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생 략)	제8조의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이공계 <u>대학의 학과</u> 개편 등에 따라 수급자의 소속 <u>학과</u> 가 없어 진 경우. 다만, 명칭이 변경되거나 인접 <u>학과</u> 와 통폐합된 경우는 제 외한다.	3. --- <u>대학(원)의 학과(전공)</u> --- ----- <u>학과(전공)</u> ----- ----- ---- <u>학과(전공)</u> ----- -----.
4. <u>이공계의 산·학·연이 도산하</u> <u>거나 조직이 폐지·축소되는 등</u> <u>수급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u> <u>수급자가 해당 기관에 근무할 수</u> <u>없게 된 경우</u>	4. <삭 제>
5. 그 밖에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 사가 제1호부터 <u>제4호</u> 까지의 규정 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 ----- <u>제3호</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급자가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만큼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종사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의 산·학·연에 종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이공계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같은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초의학 등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

3.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이공계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거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

③ <삭 제>

④ <삭 제>

치단체에서 과학기술직·기술직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국외 및 융·

복합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⑤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
장려금의 반납의무는 수급자가 제
2항에 따른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날 또는 이공계가
아닌 산·학·연에 진학하거나 취
업한 날부터 발생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연구장려금의 환수
절차, 대상자의 확인, 소명절차 등
연구장려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가 정한다.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공계 외의 분야로 전
공을 변경한 날-----

-----..

⑥ ----- 제5항-----

-----.

제8조의3(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

원) ① 법제9조의4제1항의 “이공

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 중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표준지침 제작과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의견제시를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

제11조(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1. ~ 2. (생략)

3. 업종, 기업 규모, 보유하고 있는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요원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② 재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미리 재교육훈련 대상 인력의 파악 및 재교육훈련 수요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세운 재교육훈련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이하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교육훈련 실시기관은 재교육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교육 등)

① ----- 재교육, 재훈련 및 경력개발(이하 “재교육등”이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 재교육등-----

② 재교육등-----
----- 재교육등 -----
----- 재교육등 -----
----- 재교육등 -----
-----.

③ ----- 재교육등
----- 재교육등 --

----- 재교육등 -----.

④ 재교육등 ----- 재교육등

훈련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
교육훈련실시기관이 재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

- ⑤ ----- 재
교육등 ----- 재교육등

---.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는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조직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4.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관련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
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
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신 설>

인정되는 사람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고
경력과학기술인의 정보수집 범
위”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성명, 연락
처, 국가연구자번호 등 기본정보

2.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및 자격정보

3.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종사한 경
력정보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

5.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의2(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법 제23조의2제4호에 따른 “그 밖
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
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2.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지역의 활동 지원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1. ~ 6. (생략) 7. <신설> ② ~ ⑤ (생략)	3. <u>과학기술 콘텐츠 및 과학기술 문화 우수상품 선정·확산 지원</u> 4. <u>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의 성과 관리·확산 지원</u> 제2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정력과학기술인의 경력 관리와 적합한 직무 발굴,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4828